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직무감찰 대상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제외〉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14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용기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2. 28.
3. 회 부 일 : 2025. 3.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지위나 업무의 성격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현행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연히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이고, 그에 따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함. 따라서 헌법의 취지에 맞게 감사원법에서 직무감찰의 예외로 둔 국회나 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동일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렇게 규정해야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서 발생하는 직무감찰과 관련한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 가능함. 이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려는 것임(제24조제3항 개정).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서 제외되는 공무원(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더불어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안 제2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4조(감찰 사항) ①·② (생략)	제24조(감찰 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법원 및 <u>헌법재판소에</u>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③ ----- <u>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에</u>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 헌법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설치하고 있고(헌법 제97조1), 이 법은 감사원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와 그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에 대해 감찰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감찰 범위에서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음(제24조제1항·제3항2)).

- 1) 「대한민국 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 2)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

○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 및 그 제외에 관한 제24조는 1963. 12.

17. 이 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³⁾하였으며, 1995. 1. 개정으로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이 제외 대상으로 추가되었음⁴⁾⁵⁾.

□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를 다룬 헌법재판소 2025. 2. 27. 선고 2023헌라5 전원재판부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⁶⁾하다고 하였음.

□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확인적으로 규정⁷⁾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보임.

의 직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3.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4.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③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3) 「**감사원법**」(법률 제1495호, 1963.12.13. 폐지제정, 1963.12.17. 시행)

제24조(감찰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③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 및 법원에 소속한 공무원을 제외한다.

4) 「**감사원법**」(법률 제4937호, 1995.1.5. 일부개정, 1995.1.5. 시행)

제24조(감찰사항) ③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을 제외한다.

5) 한편, 위 개정법률의 성립 과정에 관한 제171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1994. 12. 22.)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더불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감찰 대상 제외 명문화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됨.

6)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이들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 제97조가 정한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7) 또한, 헌법재판소는 해당 결정에서 현행 제24조제3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명문화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예시적·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직무감찰 대상에서

□ 개정안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찬성하는 입장⁸⁾이며, 감사원은 “의견 없음”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55

제외된다고 보고 있음.

“피청구인은 위 조항의 문리해석상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이러한 해석이 입법자의 의도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들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을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한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은 예시적·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이 청구인을 직무감찰 제외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조직쇄신 방안 등을 통해 종래 사무처 소속 하에 두었던 감사조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속으로 변경하고, 2024. 1. 1. 감사조직의 장인 감사관을 외부인사로 임명하였으며, 독립된 심의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제도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독립 직무감찰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자체감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예정으로 설명하고 있음.